6. 建設部 主要 業務 計劃

資料提供 : 建設部

Ⅰ. 대통령공약 추진계획

○건설부 소관 공약사업은 총 67건

－제도개선사항 : 27건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토지이용규제의 대폭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 해소

지하수관리법 제정 등

－투자사업 : 40건

'98년까지 주택보급율 90% 수준 제고

'98년까지 도로수송능력 배증

상수도보급율을 90%로 제고

남강댐, 용담댐, 횡성댐, 밀양댐, 부안댐 건설 등

○공약사업은 금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제도개선사항은 국민과 기업이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모두 완료

－투자사업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집중 투자함으로써 임기내에 이행

◆ EXPO 지원사업을 예정대로 마무리

－EXPO진입도로, 주차장 연결교량(둔산대교) 등

Ⅱ.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

◆ 기본목표

○ 살기 편하고 기업하기 쉬운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 자율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는 투명한 건설행정 구현
- 새로운 시각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
- 선진국진입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생활환경 조성

◆ 역점추진시책

○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신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건설행정쇄신

○ 부동산투기의 근원적 방지

1.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1) 기본방향

○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 시책을 펴오고 있으나 인구의 집중현상은 계속 심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전국인구의 43%(1,860만명), 제조업체의 58%가 집중

○ 앞으로는 규제위주의 시책보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수도권정비시책을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조정

(2) 지역개발시책을 적극 추진

○ 서울에 상응할 수 있는 지방거점도시를 육성

－부산·대구·광주·대전에 대한 광역 대도시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거점도시로 발전

· 부산권 : 국제무역·금융　　· 대구권 : 전자·패션산업

· 광주권 : 첨단산업·문화　　· 대전권 : 행정·연구

○ 중국과의 교역증진에 대비하여 서해안에 신산업지대 조성

－아산, 군산·장항, 대불 등 대규모 임해공단 인근에 쾌적한 배후도시를 건설하여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

○ 지방중소도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공장·연구소 등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

○ 강원내륙, 경북북부, 지리산·덕유산 일대 등 낙후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발

○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을 추진

(3) 수도권 정비시책의 합리적 개선

○ 인구 집중요인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 억제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통·환경·용수 등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의무화

－대형건축물의 신·증축에 대한 직접규제를 지양하고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 서울 강남북을 균형있게 개발하여 서울을 선진국 수준의 국제도시로 정비

－서울과 주변 도시간의 기능을 조화있게 재배분

－순환고속도로, 전철 등 교통망을 정비

○ 개발이 낙후된 경기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단지를 개발하고 도시형 산업을 유치

2. 무주택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

(1) 주택공급 확대

○ 주택보급율이 아직도 76%에 불과하고 전가구의 20%가 단칸셋방에 거주

－매년 50~6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하여 '98년에는 주택보급율을 90%로 제고

○ 올해는 주택 55만호를 소형위주로 건설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25만호의 주택을 전량 18평 이하로 건설

－민간부문에서 짓는 30만호중 75%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로 건설

○ 금년도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 1,700만평을 적기에 공급

－전체의 60%인 1,000만평은 토지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

－나머지는 도시내 나대지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충당

－특히, 대도시지역은 주상복합용도의 건물을 짓도록 하여 주택과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

○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지원

－주택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

－중산층이상을 위한 주택은 시장기능에 따라 해결되는 방안을 강구

(2)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올해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25만호의 소형주택중 도시서민에게 15만호, 근로자에게 10만호를 공급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업 등으로 확대하고 융자금액도 인상

○ 임대주택 건설 촉진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의 50%를 지원

○ 전국 502개소 달동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도로·상하수도시설을 설치

－주택개량 융자금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

○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금융지원을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을 인상하고 금리를 인하

－국민주택기금에 재정출연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예탁을 확대

－주택은행이외의 은행도 주택자금 취급을 확대하도록 추진

3.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1)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건설 확대

○ 도로교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98년까지 도로의 수송능력을 2배로 늘려 주행속도를 제고

－고속도로와 국도 1,900㎞를 신설

－기존도로 4,000㎞를 4차선으로 확장

－특히, 공단진입도로 및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

○ 지역교통문제 해결

－수도권, 부산권 등 대도시권에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광역교통망계획을 수립

－중소도시는 우회도로 건설을 확대하고 교통병목지점을 우선적으로 해소

○ 올해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천～안산간, 경부고속도로의 수원～청원간을 완공하고, 국도 221㎞를 4차선으로 확장

－서해안고속도로 1단계구간중 아산만을 횡단하는 국내최장의 서해대교(7,320m)를 '93. 7월에 착공

○ '98년까지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26조원중 부족재원 6조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2) 용수공급 확대

○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늘어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목적 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

－남강댐보강사업은 '95년까지, 용담댐은 '97년까지 완공

－부안·밀양·횡성댐은 금년부터 본격 추진

－댐건설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수몰지역주민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강구

○ '98년까지 19개의 광역상수도를 건설하여 급수도시를 확대(101개→464개)

－'93년에는 수도권(Ⅴ), 전주권 등 6개의 광역상수도를 신규로 착수

－'94년에는 수도권(Ⅳ), 주암댐(Ⅰ) 등 4개 광역상수도를 완공

○ 물의 절약적 이용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규정을 추진

－사용한 물을 걸러서 공업용수, 허드렛물로 재사용하는 중수도설치를 확대

○ 이수·치수 등 하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대강 홍수통제소를 종합유역관리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4.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1)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

○ 시공업체의 책임강화

－부실공사는 시공업체 부담으로 완전 복구

－부실에 따른 사회적 피해도 시공업체가 하는 방안을 강구

○ 공사감리의 철저한 실시

－공무원 대신에 전문기술을 갖춘 감리회사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감리제를 도입

－터널·장대교 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감리는 외국 감리회사에게도 시범적으로 위탁

－감리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실 감리자는 업격히 형사처벌

○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대형공사부터 입찰자격사전심사제(P.Q.)를 도입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방지

－불법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동시에 처벌

－하도급대금의 법정기한내 지급,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을 철저히 이행

○ 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2)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

○ UR협상 등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

－건설업 면허체계를 개편하여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분야를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하여 전문건설업을 육성

○ 해외건설의 활성화

－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도급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능력있는 업체의 해외건설 참여를 확대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금융·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진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 건설기술 개발 촉진

－정부, 국영기업체, 민간업체가 공동출자하여 기술개발을 하도록 유도

－품셈기관련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건설공사 원가산정 방안을 마련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5. 신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건설행정쇄신

(1) 추진방향

○ 건설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건설행정을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혁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알려주는『게시판행정』을 구현하여 국민이 행정기관에 출입하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행정풍토 조성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법령·유권해석을 과감히 정비

－각종 인·허가제도를 등록·신고제로 대폭 전환

－건설규제의 기준을『해서는 안될 사항』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

※ 법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바로 시행, 종합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6월말까지 개선, 법개정 사항을 금년말까지 추진

○ 집행관행 개선

－일선집행기관의 업무처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실태를 수시 점

검

－건설민원상담실에 『건설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고, 장·차관이 월 1회씩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

○ 구조적 취약분야의 개혁

－부동산투기, 그린벨트훼손, 불법하도급, 불법건축행위 등을 한국병 치유차원에서 근절

(2)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하여 산지가 2/3를 차지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절실히 요망됨.

이용토지	한 국	일 본	대 만
(대지·공장용지등)	4.4%	7.0	5.9

○ 『선보호－후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국토이용체계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편

－10개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개발지역, 준보전지역, 보전지역의 4개로 단순화하여 개발가능지역을 대폭 확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

－개발지역은 주택이나 공장을 자유롭게 건설

－준보전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공해공장등의 건설을 허용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보전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한 관리

○ 토지이용규제의 기본을 종래의 수요관리위주에서 공급관리체계로 전환

－실수요자가 토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되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여부를 엄격하게 사후관리

－이용하지 않고 방치·전매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매입하거나 양도차익을 철저히 환수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 개발제한구역은 국민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지정목적대로 확고히 관리

○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투기예방대책을 아울러 구축

－이미 시가화되었거나 취락밀집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정에 맞는 완화방안을 수립

-수목이 우거진 보전임지와 우량농지 등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도록 철저히 보존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하고 엄격하게 관리

○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93.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4) 건축관련제도 개선

○ '92년 건축법을 전면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나 건축허가에 따른 일선집행기관의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장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공장 및 주택의 지하층 설치의무제를 폐지

-건축심의·경관심의 등 각종 사전심의제도를 일괄 처리

○ 장기적으로 건축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건축기준을 위반하면 엄격히 제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6.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방지

(1) 최근의 부동산 시장 동향

○ 지난 10년간 부동산투기로 땅값이 년평균 15%씩 상승

-작년 봄부터는 경기침체와 토지공개념시책 등으로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안정세를 유지

○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토지규제 완화조치는 택지나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시켜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과도기적으로 부동자금의 투기자금화할 가능성이 있음.

○ 지난 3월 19일부터 땅값상승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개발제한구역 등 20개 시·도·구에 투기단속반을 투입·조사

-땅값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거래도 한산한 상태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일련의 개혁조치로 인하여 투기는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임.

○ 그러나 부동산투기는 경제·사회여건이 변화하면 재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예방단속을 실시하면서

－한국병 치유차원에서 투기의 근원적 방지대책을 강구

(2) 부동산투기 재연방지

○ 투기예고지표 등을 통하여 투기조짐이 포착되는대로 즉각 단속반을 투입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투기행위자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관리

○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토지대장·주민등록자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자료와 건설부의 공시지가자료를 가구별로 입력하여 종합전산망을 구축(관계부처와 협의)

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